##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24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정혜경·전종덕·박홍배

민형배 · 윤종오 · 김태선

이학영 · 이재강 · 김남근

강득구 • 한창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급가족,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자원봉사자 등을 제외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무급 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5인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징수를 확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8조의8 및 제48조의9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22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2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무급가족종사자"란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제13조제2항 본문 중 "보수총액"을 "보수총액(여러 사업자로부터 근로 자로서 보수를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 제59조의5에 따라 재충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기간 동안 사업주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6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건설업"을 "건설업, 농림어업"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6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용되어"를 "고용되거나노무를 제공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가는 천재지변, 경제위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거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5까지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제4항 중 "그 밖에"를 "「고용보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어떠한 종류의 피보험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청구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로 한다.

제48조의6제6항ㆍ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8 및 제48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8(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 조의3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자(이하 이 조에서 "자원봉사자"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 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 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 ② 자원봉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9(산재보험 예술인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재보험 예술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예술인의 월별보험료(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 예술인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사업주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직종의 산재보험 예술인이 부상·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를 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 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해당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 유가 발생한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예술인의 산재보험 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산재보험 예술인의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 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예술인과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⑦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예술인의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 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다.
- 8 산재보험 예술인의 월 보수액 정정 신고 및 산재보험료 정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⑨ 산재보험 예술인의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 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 ⑩ 산재보험 예술인의 산재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1.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예술인"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본다.

- 2.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 3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6조의2, 제16조의4,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예술인"으로, "산재보험료율"은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로 본다.
- 3.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 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예술인"으로 본다.
- 4.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예술인"으로 본다.

제49조의 제목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를 "(사업주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중소기업 사업주" 를 각각 "사업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

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를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제6항 전단 중 "제4항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자기의 과세소득총액(여러 사업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11항 중 "가입 신청·승인"을 "가입"으로하며, 같은 조제12항제1호 중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사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5조제1항·제7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1호 및 같은 조제3호"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은 제외한다.

제49조의6 및 제49조의7을 각각 제49조의8 및 제49조의9로 하고, 제5 장에 제49조의6 및 제4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9조의 9(종전의 제49조의7) 본문 중 "제49조의6"을 "제49조의8"로 한다.

- 제49조의6(농림어업인에 대한 특례) ①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농림어업인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농림어업인은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보수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 ③ 농림어업인이 제2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농림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선택한 보 수액에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⑤ 농림어업인은 당해 보험연도에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49조의7(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제49조의2제1항의 자영업 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인 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영업(해당 자영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도 그 중 한 사업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자영업자로 보아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자영업자의 배우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피보험자가 될 경우, 해당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인 배우자는 해당 자영업 소득의 각 100분의 50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급가족종사자인 배우자는 공단에 해당 자영업 소득의 100분의 30에서 70까지의 범위 내에서 소득비율을 달리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자영업자는 위 신고 소득비율을 공제한 나머지를 얻은 것으로 본다.

- ③ 배우자 외의 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피보험자가 될 경우에는 제 3조의 기준보수를 보수액으로 한다.
- ④ 무급가족종사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과세소득액에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 ⑤ 고용보험에 가입한 무급가족종사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에 대하여는 제7조제 3호,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하고, 보험료의 부과·납부 등은 종사하는 사업이 농림어업인 경우에는 제49조의6에, 그 밖의 경우에는 제49조의2에 따른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험료 지원의 특례) ① 이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고용 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 우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농림어업 인은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 족한 것으로 본다.
  - ④ 국가는 제1항부터 제3항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충족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 및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6개월 동안 사업주 및 피보험자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2의2. "무급가족종사자"란 사업
	주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
	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종
	사하는 자를 말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3조(기준보수) ① 다음 각 호의	제3조(기준보수)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	
라 한다)을 근로자, 「고용보험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	
다)이나 같은 법 제77조의6제1	
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할 수 있다.	
	<b></b>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	2.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

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은 제외한다) 및 노무제공자(같은 법 제77조의 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② (생략)

제13조(보험료) ① (생 략)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

 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우

② (혀해과 간읔)

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신 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저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건설업</u>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농림어업-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
제59조의5에 따라 재충전급여
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기간 동
안 사업주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6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메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u>건설업,</u>
노리시어

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	)조
에	따른다.				
10	_ 시아/ 이 내	いショム	1 >	1 -1 \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 ② (생략)

-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 ①·② (생 략)
  -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 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노무제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u>근로</u> 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 야 한다. <u>다만, 1개월 동안 소</u> 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 ⑧ (생 략)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u>고용되어</u>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3. (생략) <신설>

<단서 삭제>
· <u> </u>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1
<u>고용되거나 노</u>
<u>무를 제공하여</u>
2.·3.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천재지변, 경제위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개계 네이엉엉그도 엉덩딘

② <u>제1항</u>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 ③ (생 략)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들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
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
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거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무급가
족종사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가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5까
지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4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그 사
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근
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
업자 중 어떠한 종류의 피보험

니할 수 있다.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의 산재보험 특례) ① ~ ⑤ (생 략)

⑥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삭 제〉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 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 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⑦ ~ ⑨ (생 략)

⑩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 <삭 제> 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 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 <삭 제>

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청 구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의 산재보험 특례) ① ~ ⑤ (혂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재보험 노무제 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주는 공제계산서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 다.

①·③ (생 략) <신 설>

<신 설>

① · ① (현행과 같음)

제48조의8(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3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자(이하 이 조에서 "자원봉사자"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제48조의9(산재보험 예술인의 산 재보험 특례) ① 산재보험 예

술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예술인의 월별보험료(산재보험 료에 한정한다)는 사업주가 매 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 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 예 술인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 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 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직종의 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 액으로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직종의 산재보험 예술인이 부상·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가 발생하 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해당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예술인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 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산재보험 예술인의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 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예술인과 해당 사업주에 대해 서는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⑦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예술 인의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⑧ 산재보험 예술인의 월 보수액 정정 신고 및 산재보험료정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⑨ 산재보험 예술인의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⑩ 산재보험 예술인의 산재보험 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1.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산 재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 제3항, 제7조제2호, 제10조(제 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예술인"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본다.

- 2.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산 재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 2호, 제16조의2, 제16조의4,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예술인"으로, "산 재보험료율"은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로 본다.
- 3.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산 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예술인"으로 본다.
- 4.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산

   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 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 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 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 보험료율로 한다.

- ②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 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 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 ③ <u>중소기업 사업주</u> 등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 하여는 제5조제4항·제5항·제 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제1항·제3항, 제41
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
는 "산재보험 예술인"으로 본
<u>다.</u>
49조 <u>(사업주에 대한 특례)</u> ① -
<u>사업주</u>
② <u>사업주</u>
③ <u>사업주</u>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
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u>자영업</u> 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u>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후단신설></u>

- ② (생략)
- 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

   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

,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u>자영업</u>
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한국표
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
으로 한다)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 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 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 야 하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 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 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 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 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 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다.

#### ⑦ ~ ⑨ (생 략)

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 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 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 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 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 <u>자기의</u>	과세소	<u> 득총</u>
액(여러 시	업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이를	모두 형	합산한다	<u>)</u>
⑦ ~ ⑨	(현행과	같음)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 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u>가입</u> 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②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 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제7항, 제7조제3 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를 준용한다.

2.·3. (생략) <신 설>

① <u>가입</u>	-
	-
	_
12	_
	_
	_
	_
1	_
	_
제5조제1항·제7항, 제7조제	1
호, 제10조제1호 및 같은 조	, 
<u>제3호</u>	

2. · 3. (현행과 같음)

제49조의6(농림어업인에 대한 특례) ①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 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 업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농림어업인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② 농림어업인은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보수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③ 농림어업인이 제2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 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 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1 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 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농림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 보험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49조 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농림어업인은 당해 보험연 도에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해 <신 설>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의7(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제49조의2제1항의
자영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인 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영업(해당
자영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도 그 중 한 사업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자영업자로 보아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자영업자의 배우자가 무급 가족종사자인 피보험자가 될 경우, 해당 자영업자와 무급가 족종사자인 배우자는 해당 자 영업 소득의 각 100분의 50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급 가족종사자인 배우자는 공단에 해당 자영업 소득의 100분의 3 0에서 70까지의 범위 내에서 소득비율을 달리 신고할 수 있 고, 해당 자영업자는 위 신고 소득비율을 공제한 나머지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 배우자 외의 자가 무급가족 종사자인 피보험자가 될 경우

에는 제3조의 기준보수를 보수 액으로 한다.

④ 무급가족종사자가 피보험자 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 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2 항에 따라 산정하는 과세소득 액에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 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⑤ 고용보험에 가입한 무급가 족종사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 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 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 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에 대하여는 제 제49조의6(벌칙) (생략)

제49조의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49조의6의 위반행위를 하 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조제3호, 제10조제1호부터 제3
호까지를 준용하고, 보험료의
부과·납부 등은 종사하는 사
업이 농림어업인 경우에는 제4
9조의6에, 그 밖의 경우에는 제
49조의2에 따른다. 그 밖의 필
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u> 정한다.</u>
<u>제49조의8</u> (벌칙) (현행 제49조의6
과 같음)
<u>제49조의9</u> (양벌규정)
제49조의8